

의안번호	2208950
의 퇴 인	한정애의원
회 답 일	2025.4.22.
추계번호	25B1579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8조의2 (대체·보조 수자원의 공업용 수도로의 활용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대체·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도로의 활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(제1항)	재량규정
		○ 국가는 공업용수도와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대체·보조 수자원 시설과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48조의2제1항 (대체·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도로의 활용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8조의2제2항 (대체·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도로의 활용)	—	○ 환경부는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업용수도의 수요 파악에 따른 대체·보조 수자원 시설의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,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상세 사유

- 안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수자원법」”) 제23조¹⁾에 의한 대체·보조 수자원을 활용하여 공업용수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참고로 공업용수도 중 「수자원법」 제23조에 따른 대체수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은 해수담수화 시설 1개소, 하수 재이용 시설 3개소임

[표 1] 공업용수도 중 대체수자원 활용현황

구분	시설명	시설용량 (2024년 공급실적)	공급대상	공사비 (재원부담)
해수 담수화	광양 동호안 해수담수화시설	30,000m ³ /일 (20,000m ³ /일)	포스코 (광양제철소)	490억원 (민간 100%)
	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	100,000m ³ /일 (92,000m ³ /일)	포스코, 공단정수장,동국산업, 포스코 강판 등	1,259억원 (국고보조60%, 민간 40%)
하수 재이용	아산신도시 하수처리 및 재이용시설	27,000m ³ /일 (23,500m ³ /일)	삼성SDC	1,216억원 (국고보조 71.8%, 민간 28.2%)
	칠곡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	10,000m ³ /일 (47,400m ³ /일)	왜관지방산업단지	593억원 (국고보조 55.3%, 민간 34.1%, 원인자 10.6%)

자료: 환경부

1) 제23조(대체·보조 수자원의 개발·활용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(用水)의 부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·보조 수자원의 개발·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1. 바닷물의 민물화
 2. 지하수 인공함양(人工涵養)
 3. 빗물 활용
 4. 그 밖에 대체·보조 수자원의 개발·활용을 위한 방법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체·보조 수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물순환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에 설치된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체·보조 수자원 개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으로 인한 비용으로서 지원의 기준,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개정안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